인천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9. 12. 24(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9. 11. 24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09. 11. 24
라. 상정일자 : 2009. 12. 18(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검토보고 : 건설교통전문위원 김동호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임원을 임명할 경우 사장뿐만 아니라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인천교통공사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을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사장, 이사, 감사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 공사의 사업에 주차장건설 및 운영사업,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및 환승시설의 운영사업, 전국호환 교통카드 운영 관련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신설함(안 제 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교통공사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변경하고, 임원을 임명할 경우 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감사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도록 하였고, 사업의 범위를 기존 7개 항목에 4개의 항목을 추가 하는 사항이며 여타 내용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박승희 위원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 답 변 >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시에서 2명, 의회에서 3명, 교통공사 이사회에서 2명 추천을 받아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질 의 >

○ 성용기 위원

- 교통공사의 사업에 신규로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별도 보고를 받았는데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 답 변 >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주차장 건설사업으로 연수구 1개, 계양구 1개 2지역에 대한 수익성이 있어 검토하기로 함

< 질 의 >

○ 이재호 위원

- 제19조 6항 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타이거항공 때문에 개정한 것이데, 실효성이 없어진 마당에 삭제해야 하지 않는지?

< 답 변 >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함

< 질 의 >

○ 이재호 위원

- 교통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중 현재 월미은하레일 적자 보존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 답 변 >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월미은하레일 공사가 끝나면 위탁을 줄 계획임

5. 토론요지

가. 찬성 : 강문기, 노경수, 박승희, 성용기, 이재호, 이은석 위원

나. 반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 6명)

8. 기타 특이사항

○ 없음

붙임 : 1. 인천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교통공사 설치 조례”를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라 한다)”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인천교통공사”로 한다.

제2조 중 “공사”를 “인천교통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7인 이내로 한다”를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1회에 한하여”를 “1년 단위로”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인천광역시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예산부서의 장”을 “공기업 총괄담당부서의 장”으로, “2인 이내로”를 “100분의 50미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자는 제외한다.

제12조 각 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7조제3항・제4항・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여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8.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및 환승시설의 운영사업
9. 전국호환 교통카드 운영 관련 사업
10.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제26조 제목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리계리”를 “분리하여 회계처리”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28조제1항제3호·제35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교통공사 설치 조례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규정에 의거 인천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교통관련사업등의 건설 및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인천교통공사----------.
제2조(법인격)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인천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한다)----------.
제10조(임원) ①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7인 이내로 한다.	제10조(임원)----------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1년 단위로----------다만,----------
제10조의2(사장) ①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인천광역시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의2(사장)①----------「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③(생략)	② ~ ③(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3(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 이사는 시의 공사감독부서의 장, 예산부서의 장등을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인 이내로 한다. ②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10조의3(이사) ① ---------- ---------- --공기업 총괄담당 부서의 장---------- ---------- ----------100분의 50미만으로-----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시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조의4(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자는 제외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17조(이사회) ① ~ ②(생략)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이사회) ① ~ ②(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⑤ (현행과 같음)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6.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7.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19조(사업)----------. 1. ~ 6. (현행과 같음) 7.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8.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및 환승시설의 운영사업 9. 전국호환 교통카드 운영 관련사업 10.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11. 그 밖에 ----------.
제2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제2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그 밖의----------.
제26조(계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계리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제26조(회계처리-----) ① ---------- 회계처리----------. ② ---------- 분리하여 회계처리----------.
제28조(지방비의 부담) ①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한다. 1. ~ 2. (생략) 3. 기타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 할 수 없는 경비 ② (생략)	제28조(지방비의 부담)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5조(감독) ① (생략)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 3. (생략) 4. 기타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제37조 (상법 및 타법령의 준용) ① (생략) ② 공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영, 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제37조 (상법 및 타법령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삭제>